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 
사용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報 道 參 考  
資 料

생 산 일	2005년 5월 18일
생산부서	국고국 국유재산
담당과장	김재호(2110-2366)
담 당 자	박희량(2110-2369)

## 제목 : 국유재산 가격의 재평가

◇ 재정경제부는 매 5년마다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(가격개정)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유재산법(제47조)에 따라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가격재평가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현실가격을 반영할 계획임

○ 금년 재평가 대상재산\*은 토지, 건물 등 '04회계연도 결산대상 재산 217조원(잠정)의 42.7%인 92.7조원(잠정)임

※ 결산 대상재산 중 현실가가 반영된 2년 이내 취득 재산, 유가증권(액면가 기준), 다른 법령에 의해 매년 가격개정 하는 재산은 제외

◇ 가격재평가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가격재평가 결과는 '05 회계연도 결산시 반영

○ 이를 위하여 4월에 가격개정지침\*을 마련하여 각 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(4.27~29 3일간) 하였고, 관리청별로 동지침에 따라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게 됨

\* 가격개정 개요, 대상재산 및 제외재산, 각 재산종류별 평가방법(예 :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, 건물의 경우 대상재산을 평가시점에서 재생산·재취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), 가격개정 결과 보고 등이 주 내용

◇ 가격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국유재산 대장가액이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조정되므로

○ “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”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어 매년 작성되는 정부 결산서의 정확도를 제고하게 됨

\* 2000년 가격재평가 결과 : 개정전 105조 8,672억원 → 개정후 110조 2,917억원으로 4조 4,245억원 증가